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등에 대한 현행 도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.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도로점용료 산정기준

. 점용면적의 산정 (조례 제3조제8항)

- 2개 이상의 관을 같은 목적으로 설치시 개개의 관의 크기를 각각 산정
→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함.

. 점용료 산정기준표 (별표 1)

- 점용물의종류란중 제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『전기관.통신시설관』을 추가

○ 점용료의 조정 (별표 2)

- 점용료조정산식의 납부할점용료란 조정산식중 『100분의220을 100분의200』으로함.

□ 근거법령

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

□ 기타 참고자료 붙임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점용물중 전기관,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 점용허가 건별로 전체의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.

[별표 1] 도로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종류란중 제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"전기관, 통신시설관"을 추가하고.

[별표 2] 점용료조정산식의 납부할점용료란 조정산식중 "100분의220"을 "100분의20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